■ 민족문화연구 제87호(2020.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31-160.
http://doi.org/10.17948/kcs.2020..87.131

명종대 선과(禪科) 복원에 대한 고찰

문상련(文相連, 正覺)*

목 차

1. 서언
2. 양종(兩宗) 복립과 선과(禪科)
3. 명종대 선과의 양상
4. 결어

국문초록

조선 초에는 태조 6년(1397) 공포된『경제육전』이래 시승(試僧)에 의해 승직자를 선출하는 승려 과거제도, 즉 승과(僧科)가 존재하였다. 태종 2년(1402)『경제육전』에 근거해 '재행의 시험[試才行]'을 통해 도첩(度牒)이 발급된 이래, 성종 16년(1485) 반포된『경국대전』「예전」의 '도승(度僧)' 조 규범은, 도승에 따른 도첩제(度牒制) 시행은 물론 승과 시행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성종 23년(1492) 도첩제가 정지되었으며, 중종 11년(1516) 12월에는『경국대전』중「도승」조가 삭제되어 승과 시행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명종 5년(1550) 보우(普雨)와 문정왕후의 세력에 힘입어 양종(兩宗)이 복립되었으며, 명종 7년(1552) 시경(試經)에 따른 도첩 발급과 함께, 명종 9년(1554)에 이르러 승과가 복원되었다. 명종대의 승과는 선과(禪科)라 불리었다. 그럼에도 복원된 선과

*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는 식년의 원칙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던바, 이후 명종 17년(1562) 보우의 관교(官敎) 삭탈에 이어 명종 19년(1564)에는 선과가 중단되었다. 이후 명종 20년(1565) 문정왕후가 선과를 복구하려 했으나 곧바로 문정왕후의 죽음과, 다음 해인 명종 21년(1566) 제주도 유배지에서 보우가 주살된 과정과 관련해 복원된 선과는 막을 내렸던바, 명종 21년 선시의 최종적 혁파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였다.

주제어: 승과(僧科), 선시(選試), 선과(禪科), 도첩(度牒), 양종(兩宗), 호패법(號牌法).

1. 서언

조선초의 승과(僧科)는 선시(選試)라 통칭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과거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생원・진사과에 해당하는 소과(小科)의 경우, 선시에서는 '시재행(試才行, 재행 시험)'의 예로써 시행되었다. 『태종실록』 2년(1402) 6월 기사에 "무릇 승니(僧尼)는 시재행 하여 도첩(度牒)을 발급하고 삭발을 허용함이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다"[1]는 것으로, 이는 태조 6년(1397) 공포된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의거한 것이다. 한편 '시재행'의 예는 『경국대전』「예전」 '도승(度僧)' 조에 의하면 『심경(心經)』과 『금강경』, 『살달타(薩怛陁)』에 대한 송경(誦經)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세종대에는 유생 「문공가례(文公家禮)」의 강(講)에 의거해 「명칭가곡(名稱歌曲)」의 송(誦)이 추가되기도 하였다.[2]

시재행에 합격한 자는 중격자(中格者)라 칭했으며, 군역에 대한 대납으로 양반자제의 경우 오승포 100필 등 정전(丁錢)을 납부한 후[3] 소과 입격자와 같이 백패(白牌)에 준하는 도첩을 발급받았다. 도첩식(度牒式)에는 도첩 수급자를 학생(學生)으로 명기했으며, 이는 도첩을 발급받은 승(僧)이 초입사례(初入仕例, 소과 入格)의 예에 해당한 자임을 말하는 것이었다.[4]

---

1) 『태종실록』 2년 6월 18일 條. "凡僧尼試才行給度牒, 許令削髮, 六典所載."
2) 『세종실록』 1년 12월 12일 條. "又赴選僧徒, 依儒生講文公家禮, 能誦名稱歌曲者, 許令赴選. 從之."
3) 『예종실록』 1년 10월 27일 條에 "『심경』, 『금강경』, 『살달타』, 『법화경』 등을 시험해 中格者를 보고하게 하고 (…)"란 기사가 실려 있어, 中格者는 '시험에 通한 자'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성종실록』 1년(1470) 3월 6일 條에는 "中格者, 收丁錢, 五十匹."이라 하여 중격자에 대한 丁錢 납부의 예가 실려 있다.
4) 문상련(정각), 「조선의 승과, 選試 혁파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제39집, 동아시아불교

시재행에 합격한 중격자, 즉 도첩승(度牒僧)은 대과(大科)에 비견되는 선시를 치를 수 있었다. 선시는 『경국대전』「도승」조에 의거해 식년시로 시행되었다. 식년 한해 전에 초시(初試)를 치렀으며 초선(抄選)의 숫자는 오교양종의 7종(宗) 시기에는 280-560명 정도를, 세종 6년(1424) 선교양종의 통합 이후에는 문무과의 초시 숫자와 같이 양종에서 각 100명씩 200명을 뽑아 합격자를 입선(入選)이라 칭했다.[5]

그리고 이듬해 복시(覆試) 때 예조의 관리가 판사(判事)와 장무(掌務), 전법(傳法) 등 3인 및 증의(證義) 10인과 함께 『경국대전』「도승」조에 의거해 선종은 『전등(傳燈)』, 『염송(拈頌)』을, 교종은 『화엄경』, 『십지론』을 시험해 선종과 교종 각각 100명 중 ⅓ 정도인 30인씩을 뽑았다. 양종 각 30인씩의 입격자를 대선(大選, 또는 大禪)이라 칭했으며,[6] 대선을 대상으로 한 중시(重試)가 또다시 치러졌다. 중시를 통해 6품의 중덕(中德)과 7 내지 8품 등 등계(登階)를 주었으며, 교지(敎旨)를 발급하였다. 또한 중덕의 경우 주지로 임명될 때 6품의 예에 따라 고신교첩(告身敎牒)을 발급받기도 하였다.[7]

조선 초 세종대의 경우 도승(度僧) 자격을 양반자제 내지 양인자제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일면 금승(禁僧)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호불(護佛)의 경향 속에 세조 연간에는 공사천(公私賤) 내지 난신 연루자에게까지 도승 자격을 부여하였다. 또한 승인호패법(僧人號牌法) 실시와 부역을 통한 도첩 발급으로 인해, 도첩승 내지 호패를 소지한 승(僧)의 증대, 그리고 무도첩승으로 말미암아 승도가 40여만 명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다.

문화학회, 2019, 52면.

5) 양혜원, 「조선초기 법전의 僧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7, 208-209면 참조.

6) 『성종실록』 9년(1478) 8월 4일 기사에 "選에 合格한 자[中是選者]는 大選이 되고, 中德이 됩니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한 1525년 간행된 『용재총화』 제9권에 세종-연산군대의 僧科(選試) 내용의 기록 중 "입격자는 大選이라 일컫는다"하여 選試 입격자를 大選이라 칭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종실록』 4년(1509) 9월 27일 기사에 "『대전』에 '大禪은 取才하여 도첩을 준다'는 것이 禮典에 실려 있고 (…)"란 기록을 시작으로 『명종실록』 7년(1512) 5월 4일 기사에 "大禪取才 (…)" 등의 기사에 이르기까지 僧科(明宗代의 경우 禪科로 통칭) 8건의 기사가 실려 있어, 중종 이후에는 僧科(選試, 禪科) 입격자를 大禪이라 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불교통사』 明宗復禪科明心宗 條에 "大選(大選은 文武의 大科와 같다)"이란 내용이 실려 있어 용어상 혼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7) 문상련(정각), 앞의 글, 2019, 52면.

세조 때 도승책(度僧策)으로 인한 승도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군액(軍額) 부족은 성종 즉위년 이후 호패법 폐지의 구실이 되었으며,[8] 성종 24년(1493) 반포된 『대전속록』에서는 '도승' 조가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연산군 대에는 양종 혁파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산군 10년(1504) 양종(선종도회소 흥천사와 교종도회소 흥덕사)이 불타버린 금승(禁僧)의 상황에서도 1504년까지는 선시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중종 즉위 2년(1507) 식년에 선시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이어 명종 7년(1552) 선시가 복원되어 선과(禪科)라 칭했던바, 복원된 선과는 명종 21년(1566) 또다시 혁파되기에 이른다.[9]

그동안 조선시대의 도승 내지 도첩제, 그리고 승직 및 승관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10] 그러나 승과 즉 선시에 대한 연구는 미비했던바,[11] 특히 명종 이후 복원된 선시인 선과에 대해서는 개설적 이해만이 존재하였다. 이에 필자는 기존 연구의 바탕 위에 명종대에 복원된 선시, 즉 선과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고찰하는 가운데 기존 선시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이 복원 이후의 예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복원된 선과와 이전 선시와

8) 같은 글, 55면 참조.

9) 『명종실록』 21년 4월 20일 條.

10) 度僧 내지 度牒制 관련으로 다음 연구가 있다. 강경남, 「度牒制考」, 『東國思想』 제16집, 동국대 불교학회·철학회, 1983; 민순의, 「조선전기 도첩제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김영태, 「조선전기의 度僧 및 赴役僧 문제」, 『佛教學報』 제32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95; 이승준, 「조선전기 도첩제의 추이」,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0; 「朝鮮初期 度牒制의 運營과 그 推移」, 『湖西史學』 제29집, 湖西史學會, 2000; 이재창, 「朝鮮朝 初期의 度牒制」, 『(田雲德總務院長華甲紀念)佛教學論叢』, 大韓佛教天台宗 總本山 救仁寺, 1999; 황인규,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도첩제의 시행과 그 의미」, 『보조사상』 제22집, 보조사상연구원, 2004; 安啓賢, 「佛教抑制策과 佛教界의 動向—度牒制와 赴役僧」, 『한국사』 11권, 국사편찬위원회, 1974; 양혜원, 「고려후기-조선전기 免役僧의 증가와 度牒制 시행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제44집, 한국사상사학회, 2013; 崔鎭錫, 「高麗後期의 度牒制에 對하여」, 『경희사학』 제3집, 경희대 사학회, 1972. 僧職 및 승관제 관련으로 다음 연구가 있다. 류기정, 「조선전기 승정의 정비와 운영」,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1; 사문경, 「15세기 초반 僧錄司의 改編과 革罷」, 『호서사학』 제26집, 호서사학회, 1999; 이봉춘, 「조선시대의 승직제도」, 『한국불교학』 제25집, 한국불교학회, 1999; 전영근, 「조선시대 승관제와 승인 인사 관련 문서」, 『古文書硏究』 제30집, 한국고문서학회, 2007.

11) 僧科와 관련해 다음 논문 등에서 단편적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양혜원, 앞의 글, 2017, 144-261면; 전영근, 「朝鮮時代 寺刹文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1, 40-42면; 양혜원, 「15세기 승과(僧科) 연구」, 『한국사상사학』 제62집, 한국사상사학회, 2019, 59-88면; 문상련(정각), 앞의 글, 2019, 51-79면.

의 차이점이 발견되기도 할 것이다.

본 논지는 명종 5년(1550)의 선과 복원으로부터 명종 21년(1566) 복원된 선과의 최종적 혁파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한정한 채 관련 내용을 서술코자 한다. 또한 문헌 자료로는 『조선왕조실록』 및 몇몇 사료를 바탕할 것이며, 성종 16년(1485) 완성된 『경국대전』과 성종 24년(1493) 5월 반포 시행된 『대전속록』, 명종 10년(1555) 경국대전 조문과 용어를 주석해 간행한 『경국대전주해』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코자 한다.

2. 양종(兩宗) 복립과 선과(禪科)

조선 초에는 태조 6년(1397) 공포된 『경제육전』 이래 시승(試僧)에 의해 승직자(僧職者)를 선출하는 승려 과거제도, 즉 승과가 실시되었다. 또한 태종 2년(1402) 『경제육전』에 근거한 시재행을 통해 도첩 발급이 시행되었으며, 성종 16년(1485) 반포된 『경국대전』 「예전」의 '도승' 조 규범은, 도첩제 시행은 물론 승과 즉 선시 시행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산군 10년(1504)을 기점으로 선시가 더이상 시행되지 않았으며, 중종 7년(1512)에는 양종이 혁파되고, 중종 11년(1516) 12월에는 『경국대전』 중 「도승」 조가 삭제되어 선시가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1) 양종과 선과 복원

이후 1544년 11월 중종(中宗) 서거 후, 인종(仁宗, 1544-1545)의 8개월 재위를 거쳐 1545년 7월 명종(明宗)이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게 되었다. 이에 명종의 자친(慈親)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도승과 양종 복립의 계기가 되었다.

물론 명종 초에 다수의 승려가 존재하여, 『명종실록』 2년(1547) 2월 기사에 "승려들이 점차 불어나는 것이 숭불하던 때보다 심하여, 양인과 천인이 신역(身役)을 피해 도망하여 날로 승려가 되는데, 군액이 줄어듦은 이 때문이니(…)"[12]라는 우려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역에 따른 승인호패(僧人號牌)

발급의 경우, 『명종실록』 3년(1548) 4월 기사에 "부산포의 담쌓는 승군[僧軍, 부역승][13]이 600여 명이나 되는데, 양천(良賤)을 구분하지 않고 1-2개월 역사(役事)를 하면 호패를 주어 죽을 때까지 한역(閑役)을 하게 되니, 도리어 정전(丁錢)과 도첩의 법이 가벼워 승(僧)이 국역을 회피하는 길을 더 열어 놓았다"[14]는 이질적인 상황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는 조선 초에 양반자제로 한정되었던 도승 자격이 천민까지 확대된 예로, 부역승의 양산은 승려 신분을 비하시키는 요인이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승려 양산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때는 대비(문정왕후)가 불교를 일으키고자, 주장할 만한 승려를 널리 수소문해 정만종(鄭萬鍾)과 내수사의 추천으로 보우(普雨)를 발탁한 때로,[15] 1548년(명종 3) 12월 보우를 지음(持音)으로 차임해 봉은사 주지로 임명한 때이기도 하였다.[16] 이런 정황 가운데 명종 초에 문정왕후에 의해 양종 복립(復立)이 추진되었던바, 『명종실록』 5년(1550) 12월 기사에 다음 내용이 전해진다.

> 선교양종의 복립을 명하였다. 자전[慈殿, 문정왕후]이 [예문관] 상진에게 내린 비망기에 이르기를, "양민의 수가 날로 줄어 (…) 백성들이 4-5명의 아들이 있을 경우 군역의 괴로움을 꺼려 모두 도망하여 승이 되는데 (…) 승도들 중 통솔하는 이가 없으면 잡승을 금단하기 어렵다. 조종조(祖宗朝)의 『대전』에 선종과 교종을 설립한 것은 (…) 승이 됨을 막고자 함이었는데, 근래 혁파했기 때문에 폐단을 막기 어렵게 되었다. 봉은사와 봉선사를 선종과 교종의 본산으로 삼아 『대전』에 따라 「대선취재(大禪取才)」 조 및 승(僧)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신명하여 거행토록 하라.[17]

봉은사와 봉선사를 선종과 교종의 본산으로 삼아 양종을 복립케 한 문정왕후[慈殿]의 비망기는 군역을 피해 도망한 잡승을 금한다는 표면적 이유를

---

12) 『명종실록』 2년 2월 9일 條.
13) 勞役에 따른 赴役僧은 종종 僧軍이란 용어로 쓰이고 있다.
14) 『명종실록』 3년 4월 4일 條.
15) 『명종실록』 6년 2월 12일 條; 7년 5월 29일 條; 21년 7월 25일 條 참조.
16) 『명종실록』 4년 9월 20일 條. "普雨는 오도를 좀먹는 賊입니다 (…) 文墨의 技藝까지 곁들인 자로서 그가 內命으로 奉恩寺 住持가 되었을 때 (…)" 당시 內需司에서 持音을 差任하는 예가 있어, 『명종실록』 5년 3월 17일 條에 "內需司 공문을 가지고 持音을 칭하는 僧이 매우 많은데, 관원을 능멸하기도 하고 혹은 民田을 강탈하기도 하여 (…)"란 기사가 실려 있다.
17) 『명종실록』 5년 12월 15일 條.

내세웠음에도,[18] 실제는 불교 중흥을 위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명종 6년(1551) 5월 26일 「양종응행절목(兩宗應行節目)」을 예조에 전교했으며,[19] 한 달 후에는 "특명으로 보우(普雨)를 판선종사 도대선사(判禪宗事都大禪師) 봉은사 주지(奉恩寺住持)로, 수진(守眞)을 판교종사 도대사(判敎宗事都大師) 봉선사 주지(奉先寺住持)로 삼기도 하였다.[20]

또한 동년 8월 12일, "내원당에 새로 소속시킬 지음(持音)은 우선 소재지의 본 고을로 하여금 유명한 승(僧)을 선택하여 지음으로 차출하게 하고 (…) 차첩(差帖)을 받을 지음승(持音僧)은 명년 선과를 치른 후 양종에서 천거해 의망(擬望)토록 하라"[21]는 명을 내렸다. 그리고 다음 날 8월 13일 기사에 선종과 교종 400여 곳 절의 지음을 뽑게끔 조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2] 여기서 지음이란 선시 입격을 거쳐 차정첩을 받아 임명된 주지가 아닌, 내원당(內願堂)에 소속되어 원당 관리를 위해 왕실 내지(內旨)를 통해 임명된 자로,[23] 지음에게 차정첩을 준다는 것은 선시, 즉 선과의 복원 이유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명종 대에 복원된 승과는 폐지 이전에 선시, 시선(試選), 승선(僧選) 등으로 불렸던 것과는 달리 선과라 칭해졌으며, 간혹 승과라 칭해지기도 하였다.[24] 선과는 양종 회복을 위한 전제로 행해지기도 했던바, 『명종실록』 7년(1552) 1월 8일 기사에는 식년인 임오년(1552)의 '시재행'과 함께 도첩을 발급한 다

18) 『명종실록』 7년 5월 22일 條. "度僧 등의 일에 대해서는 慈殿께서 불교를 신봉해서가 아니다. 근래 僧徒를 통괄하는 데가 없어 나라의 큰 폐단을 야기시킨다고 경연 석상에서 논한 지 오래이므로 대간이 아뢴 바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19) 『명종실록』 6년 5월 26일 條.
20) 『명종실록』 6년 6월 25일 條.
21) 『명종실록』 6년 8월 12일 條. "而受差帖持音僧人, 則明年禪科後, 令兩宗擧望."
22) 『명종실록』 6년 8월 13일 條.
23) 持音은 內願堂에 속한 자로 왕실 內旨를 통해 임명되었다. 『명종실록』 6년(1551) 8월 12일 條. "이제부터 內願堂에 새로 소속시킬 持音은 (…)"; 『연산군일기』 연산 4년(1498) 7월 12일 條. "海印寺는 본시 差定된 住持인데 학조가 內旨를 칭탁하고 그 권속으로서 노상 持音을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24) 명종대의 僧科는 『명종실록』에 무려 173회에 걸쳐 禪科란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단지 2회에 걸쳐 僧科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에 명종 대의 승려 과거를 칭함에 있어 禪科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僧科란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명종실록』 6년 1월 15일 條와, 『명종실록』 7년 4월 12일 條 등을 들 수 있다.

음 기사가 실려 있다.

> 승정원이 아뢰기를, "양종을 회복시키라는 승전(承傳)에 따라 3경(三經)을 시송(試誦)시켜 경의(經義)를 잘 해득하는 자에게 도첩을 발급하라" 하였습니다. 지난번 선종이 보고한 입시승[入試之僧]이 400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의 취사를 물어보니 와서 시험친 자[來試者] 모두를 뽑았다고 했습니다.[25]

즉 양종을 회복시키라는 승전에 따라 3경을 시험해 400여 명 모두에게 도첩을 발급했다는 것으로, 이는 중종 11년(1516) 『경국대전』 중 「도승」 조를 삭제토록 명한[26] 후 이를 복원한 첫 사례임을 알 수 있다.

2) 복원된 선과의 형식

한편 도첩 발급과 관련해 『명종실록』 6년(1551) 7월 기사에 "도승(度僧)할 때 정전(丁錢)을 받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나 (…) 윤허하지 않으시니 (…)"[27]란 내용을 거쳐, 동년 8월 23일에는 정전 수납 후 도첩 발급에 따른 도승이 행해졌음을 볼 수 있다.[28] 그리고 위 내용 중 "3경을 시송시켜 경의를 잘 해득하는 자에게 도첩을 발급하라 하였습니다. 지난번 선종이 보고한 (…)"이란 부분은 명종 대에 복원된 선과의 형식을 알려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경국대전』 규정과 비교해 볼 때 몇몇 부분에서 차이

---

25) 『명종실록』 7년 1월 8일 條.
26) 『중종실록』 11년 12월 16일 條.
27) 『명종실록』 6년 7월 20일 條.
28) 『명종실록』 6년 8월 23일 條. "대간에서 兩宗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고, 결국 丁錢을 바치는 것으로 아뢰었으니 (…) 어찌 매우 구차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 백성들은 16세에 처음 兵役에 나아가 60세 노경에야 면하게 되는데 (…) 僧들은 (…) 한 번만 丁錢을 바치면 평생을 안일하게 지냅니다. (…) 그리고 僧 普雨가 內需司를 總攝한다고 하는데 (…)" 選試의 예로서 '試才行'을 거쳐 度牒을 발급한 예와는 달리 無度牒僧을 대상으로 한 '負役에 따른 號牌 발급' 또한 명종 16년(1561)까지 유지되기도 하였다. 『명종실록』 16년 10월 30일 條에는 호패 발급과 관련해, 명종 10년(1555) 『경국대전』 조문과 용어를 주석해 간행한 『經國大典註解』(後集) 禮典 春官・宗伯・度僧 條에는 "關防牌面을 懸帶[휴대]해야 한다는 律에 의거해 杖一百[의 벌을] 논한다. 그 正犯에 비추어 의거한다."는 항목에 대해 "度牒을 빌린 자나 빌려주는 자는 懸帶關防牌面律論(관방패면을 휴대해야 한다는 律에 의거해 논한다)"는 註解가 실려 있다.

점이 발견된다. 우선 『경국대전』의 경우 「예전」 '도승' 조에 "승이 되고자 하는 자[爲僧者]는 3달 안에 선종 혹 교종에 고하고, 『심경』, 『금강경』, 『살달타』의 송경을 시험하여 본조[예조]에 보고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천(私賤)은 본래 주인의 청원에 따른다. 왕에게 계문(啓聞)한 후 정전을 (…) 거두고 도첩을 발급한다"[29]는 조항이 추가되고 있음에 비해, 위 내용은 '사천'의 경우와 '왕에게 계문한 후 (…)'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종 10년(1555) 『경국대전』 조문과 용어를 주석 간행한 『경국대전주해』 「예전」 중 '춘관종백(春官宗伯)'의 도승 조에 "도승이란 승려 됨[爲僧]을 말한다. 3개월내에 선종, 혹 교종에 고하고 송경을 시험한다"[30] 하여 '사천' 및 '왕에게 계문'과 함께 '정전(丁錢) 납부'의 예가 생략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천' 내지 '정전 납부를 통한 도첩 발급'은 금승(禁僧)을 위한 조치로써 승의 증가로 인한 군액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면, 명종 대에 복원된 선과의 경우 금승의 개념이 완화된 당시 상황을 고려한 처사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금승의 개념이 완화된 예는 위 인용 중 '입시승 400여 명 모두를 뽑아 도첩을 발급했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명종 6년(1551) 8월 13일 기사에 따른, 400여 곳 절의 지음(持音)을 뽑게끔 임시 조치한 것으로, 『명종실록』 7년(1552) 1월 8일 기사에는 "추후 시험부터는 근각(根脚)까지 자세히 조사하게 하라" 하여 시경승(試經僧)의 자격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부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1]

한편 『명종실록』 7년(1552) 4월 12일 기사에는 선과 중 복시 시행을 추정케 하는 다음 내용이 실려 있다.

> 예조 정랑을 (…) 봉선(奉先)과 봉은(奉恩) 두 절에 보내 승인(僧人)을 시경(試經)해 선종 21인과 교종 12인을 뽑았는데,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선과에 응시한

29) 『경국대전』 禮典 度僧 條. "爲僧者, 三朔內, 告禪宗或敎宗, 試誦經 心經, 金剛經, 薩怛陁. 報本曹, 私賤, 則從本主情願. 啓聞, 收丁錢 (…) 給度牒."
30) 『經國大典註解』(後集) 禮典 春官・宗伯・度僧 條. "度僧 爲僧者, 三朔內, 告禪宗或敎宗, 試誦經."
31) 『명종실록』 7년 1월 8일 條.

> 승인은 모두 경을 잘 욀 것인데, 지금 유사(有司)가 뽑은 것을 보니 그 숫자가 매우 적다. ⅓을 뽑지 않은 것이 틀림없으니, 이와 같다면 도승의 일을 유사가 모두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다시 승과를 설치하게 된 것은, 교활하고 말에 능한 승 보우(普雨)란 자가 있었는데 자전이 그 이름을 듣고 존신(尊信)했기 때문이다.[32]

위 내용은 선시 폐지 이전에 예조 낭관이 담당했던 예[33]와 같이, 예조 정랑을 봉선사, 봉은사에 보내 선종 21인과 교종 12인을 뽑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사 중 명종 7년(1552)은 식년에 해당하는 해로, 『경국대전주해』「예전」 '제과(諸科)' 조에 "[諸科는] 전년 가을에 초시를 행하고, 초봄에 복시, 전시(殿試)를 행한다"[34]는 예에 따라 한해 전에 입시승 400여 명 모두를 뽑아 도첩을 발급한 '시재행'에 이어 행해진, 선과 중 복시를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용 중 "유사가 뽑은 것을 보니 그 숫자가 매우 적다. ⅓을 뽑지 않은 것이 틀림없으니"란 부분은 선과의 취재 인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종실록』 14년(1414) 7월 기사에 의하면, 선시의 경우—오교양종의 7종의 체제에서—초시에서 280-560명 정도를 뽑아 입선이라 칭하고, 복시에서는 입선 중 ⅓만을 취해 입격자 93-187명 정도를 뽑았음을 알 수 있다.[35] 오교양종(五敎兩宗)의 7종에 따른 선시의 경우는 세종 5년(1423)까지 유지되었던바,[36] 세종 6년(1424) 4월 이후[37] 선교양종(禪敎兩宗)의 2종

---

32) 『명종실록』 7년 4월 12일 條.

33) 『성종실록』 9년 8월 4일 條. "僧人의 選試는 文武科의 예와 같이 3년에 한 번씩 행하고 禮曹의 郎官이 담당합니다."

34) 『經國大典註解』(後集) 禮典 春官・宗伯・諸科 條. "覆試, 三年一試, 前秋初試, 春初覆試殿試." 『경국대전주해』는 『경국대전』 조문과 용어를 주석한 책으로 명종 10년(1555) 간행되었으나, 이 규범은 명종 7년(1552)에 역시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이를 인용하였다.

35) 『태종실록』 14년 7월 4일 條; 양혜원, 앞의 글, 2017, 208-209면 참조.

36) 『세종실록』 6년(1424) 3월 27일 기사 중 "사헌부에서 啓하기를, '지난 癸卯年(1423) 〈華嚴宗〉 選試 때 證義가 誓師가 되었는데 (…)'"라는 내용은 1423년까지 五敎兩宗의 7宗에 따른 選試가 행해졌음을 알려준다. 이 내용 중 〈華嚴宗〉이란 華嚴宗, 慈恩宗, 中神宗, 摠南宗, 始興宗 등 다섯 敎宗과, 曹溪宗, 天台宗 등 두 禪宗을 합한 五敎兩宗의 7宗 중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37) 『세종실록』 6년(1424) 4월 5일 기사에 五敎兩宗의 7종 중 "曹溪・天台・摠南 3종을 합쳐 禪宗으로, 華嚴・慈恩・中神・始興 4종을 합쳐 敎宗으로 삼고자 청하는 禮曹의 啓"와, 이를 "從之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체제에서 시행된 예를 전하는 『경국대전』「도승」 조의 경우, 복시의 예로서 '선종과 교종 각 30인씩을 뽑는다'[38] 하고 있다.[39]

이 두 사례는 모두 복시에서 입선 중 ⅓을 뽑았음을 전하는 것으로, 명종대의 선과에서도 이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명종실록』의 같은 달(4월) 18일 기사에는 위 내용과 관련해 "지금 뽑은 사람이 ⅓이 안되니 (…) 윤허하지 않는다"[40]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월당대사집』「청허대사행적」에 "임자년[壬子, 1552] 방(牓)에 선과에 출신(出身)하였다. 처음에 낙산사[洛山] 주지가 되었으며, 다음에는 선종전법사(禪宗傳法師)를 지냈고 (…)"[41]라는 내용 및, 『청허당집』「청허집보유」에 "나이 30에 선과에 합격[中]하여 (…)"[42]란 기록은 이때의 선과가 공식 인정되었음과 함께, '선종 21인'에 청허휴정(淸虛休靜)이 포함되어 낙산사 주지로 임명된 사실을 알려주고도 있다.

이때 시행된 선과의 경우 『경국대전』 규범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경국대전주해』「예전」 '제과' 조에 "[諸科는] 전년 가을에 초시를 행하고, 초봄에 복시, 전시를 행한다"[43]는 규범에도 불구하고, 명종 7년(1552) 1월 8일 '3경(三經) 시송(試誦)'의 시재행을 통해 입시승 400여 명을 뽑은 후, 동년 4월 12일 봉선사와 봉은사에서 선종 21인과 교종 12인을 뽑고 있는 것이다. 즉 시재행 후 초시를 생략한 채 복시, 전시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허집』 중 이봉성 시에 대한 청허의 차운(次韻) 가운데 "산인 역시 홍패(紅牌) 찬 객이어서[山人亦是紅腰客]"[44]란 표현이 쓰여 있음을 미루어, 선과

38) 『경국대전』 禮典 度僧 條. "試禪宗則傳燈・拈頌, 敎宗則華嚴經・十地論, 各取三十人."

39) 양혜원, 앞의 글, 2017, 208-209면 참조. 1525년 간행된 성현(1439-1504)의 『慵齋叢話』(제9권) 역시 "그 試法은 선종에서는 전등, 염송을 講하고, 교종에서는 화엄경을 講하여 각 30명을 뽑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40) 『명종실록』 7년 4월 18일 條.

41) 敬軒, 「淸虛大師行蹟」, 『霽月堂大師集』(上), 韓佛全 8, 120中면. "壬子牓禪科出身. 初行洛山住持, 次行禪宗傳法師. (…)"

42) 『淸虛堂集』 淸虛集補遺, 韓佛全 7, 735上면. "年三十, 中禪科. (…)"

43) 『經國大典註解』(後集) 禮典 春官・宗伯・諸科條. "覆試, 三年一試, 前秋初試, 春初覆試殿試." 『경국대전주해』는 『경국대전』 조문과 용어를 주석한 책으로 명종 10년(1555) 간행되었으나, 이 규범은 명종 7년(1552)에 역시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이를 인용하였다.

44) 休靜, 「走次李鳳城老倅韻」, 『淸虛集』 卷之三, 韓佛全 7, 698下면. "【公句老我至今貪五斗, 三城奔走愧龍鍾】 一[首]. 雨歇頭流千萬峯, 芙蓉爭插白雲中. 山人亦是紅腰客, 還愧西庵隔暮鍾. 二[首]. 曾栖智異最高峯,

에 합격한 승에게 홍패교지(紅牌敎旨)를 발급했음을 알 수 있기도 하다.[45]

그럼에도 위 4월 18일 기사 중 "지금 뽑은 사람이 ⅓이 안되니 (…) 윤허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해, 이틀 후 본격적으로 선과가 재시행된 구체적 예를 실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3. 명종대 선과의 양상

선과 시행에 대해 『조선불교통사』에서는 "명종 7년 임자년(1552)으로부터 비로소 선과의 초시를 실시하였다.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시험해 도첩을 주니 간략하게나마 문무과(文武科)를 모방한 것이다"[46] 하고 있다. 또한 "명종대왕 때 봉은사에 선과를 설치하여 보우화상이 주(主)가 되어 시험을 치렀는데 (…)"[47]라 하여 보우가 선과를 주관했음을 전하고 있다. 이때 시행된 선과의 경우, 『실록』과 『경국대전』에는 응시 자격과 함께 복시 내지 중시(重試)에 따른 등제(等第), 그리고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도첩식과 백패(白牌), 또한 참학입선첩(參學入選帖)과, 초시 선발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겨 있어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응시 자격과 복시, 중시에 따른 등제

우선 『명종실록』 7년(1552) 4월 20일 기사에는 역첩(役牒)을 받은 자와, 주지・지음으로서 내수사(內需司)의 차첩을 받은 자, 본 고을의 진성(陳省, 신원)이 확인된 자 등에게 선과 응시를 허락하는 다음 내용이 실려 있다.

> "지금 선과는 비록 문무과 등 제과(諸科)와 비교할 수는 없으나 조종조로부터 종문(宗門)에서 각각 먼저 도첩을 상고한 후 응시를 허락하였는데, 지금은 소속

却愧身遊道路中. 今宿古城鄰古寺, 暮天風送一聲鍾."

45) 『명종실록』 7년(1552) 4월 28일 기사에 禪科 합격자에게 '잡과의 예에 의한 白牌 발급'을 말하고 있어, 이때를 기점으로 紅牌에서 白牌 발급으로 형식이 전환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에 紅牌를 수급한 淸虛의 경우 1552년 4월 28일 이전에 禪科에 합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6) 『조선불교통사』 明宗復禪科明心宗 條.

47) 『조선불교통사』 高麗選佛初設僧科 條.

> 없는 승(僧)도 모두 모여들어 응시합니다. 전일의 승전(承傳)에 의해 견항(犬項)과 의항(蟻項)에서 역첩을 받은 자와, 주지・지음으로 내수사의 차첩을 받은 자 외에, 본 고을의 진성[신원]이 분명하다 하여 응시를 허락하는 것은 조종조의 구규(舊規)에 어긋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폐지한 지 이미 50여 년이나 되었으니 어떻게 도첩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며 (…) 견항과 의항에서 역첩을 받은 승은 모두 잡류들이었으니 경문을 해득하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본 고을에서 먼저 그 근각을 살핀 후 진성[신원]을 발급하게 하고, 그 진성에 의해 응시를 허가하게 하라" 하였다.[48]

위 내용은 부역을 통해 역첩을 받은 자와 내수사의 차첩을 받은 자뿐만이 아닌, 진성 확인자 모두에게 선과 응시 자격을 부여했음을 알려 준다. 여기서 '내수사 차첩'의 경우, 연산군 대에 양종도회소가 불탄 후 도회소(都會所)가 청계사로 이전되었고,[49] 중종 2년(1507)에 양종의 노비와 전지(田地)가 내수사에 이속되었던바,[50] 왕실 재정을 관리하던 '내수사에서 승도의 차첩을 발급했다' 함은, 내수사가 양종 기능의 일부를 대신했음을 알려 주는 예가 되기도 한다.

위 내용에 이어 『명종실록』 7년(1552) 4월 28일 기사에는 선과 합격자에게 홍패를 발급한 이전 예와 달리[51] 선과의 등제(等第) 및 잡과(雜科)의 예에 의해 백패를 발급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어, 이는 선과의 복시 내지 중시의 예를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승정원이 아뢰기를, "어제 선과의 등제를 하문하셨는데 (…) 선종승[普雨]은 '방목을 상고하여 1등・2등으로 나누되 잡과의 예와 같이 했다' 하였고, 교종승[守眞]은 '증거할 만한 문적이 없어 상고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또 잡과는 1등・2등으로 나누어 정7품・정8품의 직을 주기 때문에 등수가 있으나, 선과는 이와

48) 『명종실록』 7년 4월 20일 條.
49) 高橋亨, 『李朝佛教』, 國學資料院, 1980, 244-256면.
50) 『중종실록』 2년 4월 7일 條.
51) 앞서 필자는 『명종실록』 7년(1552) 4월 12일 기사 중 試經을 통해 禪宗 21인과 敎宗 12인을 뽑은 예와 함께, 『청허집』 중 청허의 次韻을 인용하는 가운데 선과 합격 후 紅牌 受給의 예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다음의 『명종실록』 7년(1552) 4월 28일 기사에는 禪科 登第에 대한 下問과 관련해 '잡과의 예에 의한 白牌 발급'을 말하고 있어, 이때를 기점으로 紅牌에서 白牌 발급으로 형식이 전환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 다르기 때문에 『대전』에 등제의 분별이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미 선과라 하였다면 잡과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 다른 잡과의 예에 의해 백패를 발급하고 등수를 나눌 것을 사목(事目)에 기록하도록 하라. 옛날에는 선과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 참학입선첩을 발급했으니, 고례에 의해 성급토록 하라. 주지는 출신승(出身僧)으로 하고, 지음은 참학승(參學僧)으로 차임해 보내면 잡승은 자연 없어질 것이다. 이를 양종에 이르라" 하였다.[52]

즉 선시 결과를 "1등・2등으로 나누되 잡과의 예와 같이 했다"는 선종승(普雨)의 말에 따라 잡과의 예에 의해 백패를 발급하고 등수 나눌 것을 명한 내용으로, 이는 초시에 합격한 입선을 대상으로, 복시를 거쳐 중시 결과에 따라 1등・2등으로 나누어 정7품・정8품 등의 직을 주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불교통사』「명종복선과명심종(明宗復禪科明心宗)」조에는 『정릉지(靖陵誌)』를 인용하는 가운데 선과의 복시 내지 중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 다시 선과를 세웠다. 문무과와 같은 날 개장하여 시험을 치렀다. 하관[夏官, 兵曹 관리][53]을 파견해 석자(釋子)를 살펴 경교(經敎)에 능통한 자를 뽑았다. 갑・을・병 3등 과(科)를 주었으며, 대선(大選)【大選은 文武의 大科와 같다】이라 이름하였다. 참학자(參學者)는 제술(製述)로 거듭[再] 뽑았다. 입격자를 중덕이라 불렀다.【中德은 文武의 重試와 같다】. 방을 내걸고 패(牌)를 하사함은 문무과와 같았다.[54]

위 내용 중 "문무과와 같은 날 개장해 경교(經敎)에 능통한 자를 뽑아 대선(大選)이라 하였다" 함은 복시의 예를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어, 『경국대전』「도승」조 중 복시의 예로서 '선종과 교종 각 30인씩을 뽑았음'[55]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음 기록인 "갑・을・병 3등 과를 주었다"는 부분은 중시를 말하는 것으로, 『경국대전』「예전」'제과' 조에 "문무(文科) 전시(殿試)는 33인이다.

---

52) 『명종실록』 7년 4월 28일 條.
53) 僧錄司 내지 選試는 禮曹 관할이기에 禮曹 관리인 禮曹郎廳이라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54) 『조선불교통사』(下), 798-799면; 白谷處能(1617-1680)의 『大覺登階集』 중 「奉恩寺重修記」에도 거의 유사한 기록이 실려 있다. 白谷處能, 「奉恩寺重修記」, 『大覺登階集』 卷之二, 韓佛全 8, 325下면.
55) 『경국대전』 禮典 度僧 條. "試禪宗則傳燈・拈頌, 敎宗則華嚴經・十地論, 各取三十人."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이다】"[56]는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중시를 통해 문무과의 전시와 같이 갑・을・병 3등의 과를 주었고, 그 인원에 있어서는 선종과 교종 각 30인씩 총 60인을 뽑아 등과를 배당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한편『경국대전』「이전(吏典)」'제과' 조에는 문과 급제자의 갑・을・병 3등과에 따른 품계에 대해, "문과 갑과 중 제1인은 종6품을, 나머지는 정7품, 을과는 정8품 품계를, 병과는 정9품 품계를 준다"[57]라 기록되어 있어, 선과 중시의 경우 역시 이에 따른 품계를 받았으리라 여겨진다. 또한『성종실록』에 "선(選)에 합격한 자[中是選者]는 대선이 되고, 중덕이 됩니다"[58]는 기록 및 "중덕은 6품에 준한다[中德準六品]"[59]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선과의 중시를 거쳐 갑과 중 1인은 종6품의 중덕으로 뽑고, 나머지 2인은 정7품, 을과 7인은 정8품, 나머지는 병과로서 정9품의 품계를 받았으리라 추정된다. 이는 앞의 인용 가운데 "방을 내걸고 패를 하사함은 문무과와 같았다"는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선과가 복원된 명종대의『명종실록』기사에 "잡과의 예에 의해 백패를 발급하고 등수를 나눌 것을 하문"하고 있음을 미루어, 이 부분에는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경국대전』「이전」'제과' 조에 기록된 '잡과입격자' 항목을 들면 다음과 같다.

> 雜科入格者 條
> 譯科: 一等 授從七品(於本衙門敍用 下同), 二等 從八品階, 三等 從九品階.
> 陰陽科・醫科・律科: 一等 竝從八品, 二等 正九品階, 三等 從九品階.[60]

이에 따르면 잡과 중 역과(譯科)의 경우 1등은 종7품, 2등은 종8품, 3등은 종9품의 품계를, 음양과(陰陽科)와 의과(醫科), 율과(律科)의 경우 1등은 종8품,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의 품계를 주는 것으로, "중덕은 6품에 준한다[中德準六品]"[61]는 예에 비추어 문과 급제자와 동일 품계가 적용된『성종실록』기

56)『경국대전』禮典 諸科 條. "文科殿試, 三十三人.【甲科3人, 乙科7人, 丙科23人.】"
57)『경국대전』吏典 諸科 條. "文科甲科第一人授從六品, 餘正七品. 乙科正八品階. 丙科正九品階."
58)『성종실록』9년 8월 4일 條.
59)『성종실록』8년 1월 20일 條.
60)『경국대전』吏典 諸科 條.

록과는 달리, 명종대에는 잡과에 따라 7품 이하의 품계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2) 도첩식과 백패, 참학입선첩

그럼에도 위 명종 7년(1552) 4월 28일 기사 중 '잡과의 예에 의한 백패 발급'의 경우, 현재 승인의 백패가 전해지지 않는 까닭에, 『경국대전』에 실린 「도첩식」과 「잡과백패식」, 「백패식」을 비교하여 그 형식과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62] 또한 이를 통해 도첩의 형식 역시 살펴볼 수 있는바, 먼저 도표를 통해 「도첩식」의 형식 및 내용을 말해 보기로 한다.

〈도표〉 도첩식과 백패식

도첩식	잡과백패식	백패식
禮曹牒 ①學生 某 年 甲本 某官 ②父 某職 某 外祖 某職 某 本 某官 ③本曹 啓過準 禪宗(敎宗同) 呈該 某處住 某職 某狀 告內 男 某 願納丁錢 出家爲僧 名某 伏乞出給度牒 擬此 照遵舊例 具本 於某年 月 日 某承旨 臣 某 奉 敎依允 敬此移關 該司 收訖丁錢 合給度牒者 年(印)月 日 (牒)判書(押) 參判(押) 參議(押) 正郎(押) 佐郎(押)	某曹奉 敎 具官 某 某科 幾等 第幾人 出身者 年(印)月 日 判書臣某 參判臣某 參議臣某 正郎臣某 佐郎臣某	敎旨 具官 某 生員(進士、則稱進士) 幾等 第幾人 入格者 年(寶)月 日

61) 『성종실록』 8년 1월 20일 條.
62) 『경국대전』 禮典條 用文字式 항목; 전영근, 앞의 글, 61면 참조.

위 도표를 비교해 볼 때, 「도첩식」은 「잡과백패식」과 형식에 있어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연월 사이에 보(寶, 御寶)가 아닌 인(印, 禮曹印)을 착압(着押)하고, 판서와 참판, 참의, 정랑, 좌랑의 서경(署經)을 거쳐 발급된 예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도첩식」의 경우 「잡과백패식」과는 달리 다음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즉 ①도첩을 받는 자[學生]의 성명, 나이, 본관, 관직 및, ②부(父)의 성명과 직책, 외조(外祖)의 성명과 직책, 본관, 관직 등 '두 조상[二祖]' 관련이 추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③본조(예조)에서 왕에게 아뢴 뒤, 선종(교종)에서 올린 "모처(某處)에 거주하는 모직(某職)의 모상(某狀)에 남자 모(某)가 정전을 납부하고 출가해 승명(僧名) 모(某)가 되기를 원하여 도첩을 출급해 줄 것을 엎드려 바란다"는 원에 의해, 구례에 따라 본을 갖춰 某年月日에 (某)승지 신(臣) (某)가 "[이를] 윤허한다는 [왕의] 가르침"을 받들어 공경스러이 해당 관사(官司)에 관(關)을 보냈고, 정전 수납을 마쳤으니 도첩을 발급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한편 위 「도첩식」 중 ②부(父)와 외조 등 2조(二祖)와 관련해 『세종실록』 20년(1438) 2월 기사에는 "예조는 부와 외조만을 살펴 천인이 아니면 서명해 줄 뿐이었다"[63]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또한 『명종실록』 7년(1552) 8월 기사 역시 "예조에서 승인의 도첩단자를 입계(入啓)하면서 아뢰기를, '시경(試經)한 승인(僧人)을 검열해 (…) 2조(二祖) 중 부의 이름과 승의 속명이 각기 달리 기록된 자는 도첩을 작성하는 격례에 어려움이 있으니 (…)'"[64]라 하여 도첩에 2조(二祖)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세종대로부터 명종대에 이르기까지 도첩이 위 「도첩식」의 예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추정케 하는 예이기도 하다.

또한 승인 백패의 경우 문무과의 백패가 아닌 '잡과의 예'에 따른 백패를 발급받는다는 『명종실록』 7년(1552) 4월 기사를 미루어 볼 때, 백패 수급자는 위 「잡과백패식」의 예에 따라 입격자 아닌 출신자(出身者)로 명명됨과 함

63) 『세종실록』 20년 2월 19일 條. "禮曹但考父與外祖, 不係賤人, 則行署而已."
64) 『명종실록』 7년 8월 17일 條. "禮曹以僧人度牒單子入啓曰: '試經僧人推閱 (…) 差錯之中, 二祖, 父名, 僧, 俗名各異者, 成牒格例爲難 (…)'"

께, 연월 사이에 보(어보)가 아닌 인(예조인)을 착압하고, 판서와 참판, 참의, 정랑, 좌랑의 서경을 거친 백패를 발급받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선과에 참여하지 못한 자[禪科未參者]에게 참학입선첩을 발급하였다"는 기록 중 참학(參學)에 대한 설명이 백곡처능(白谷處能, 1617-1680)의 『대각등계집』「봉은사중수기」에 실려 있다.

> "다음으로, 제작(制作)으로 틈틈이[間] 발탁된 자를 참학자(參學者)라 일컬었다. 참학이란 즉 유가의 소과(小科)이다."[65]

즉 '제작을 통해 틈틈이 발탁된 자를 참학자'라 하며 '유가의 소과와 같다'는 것으로, 이는 '시재행'을 통해 도첩을 발급받은 중격자(中格者) 내지, 이들 중 일정 시험을 통과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위 명종 7년(1552) 4월 28일 기사에서는 '이들에게 참학입선첩을 발급한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종실록』 14년(1414) 7월 기사에서 선시 중 초시에 해당하는 초선 합격자를 입선이라 칭했으며,[66] 『명종실록』 7년(1552) 5월 4일 기사에 "대선 취재 때 분수(分數)가 차지 않은[합격하지 못한] 승려에게 입선차첩(入禪差帖)을 주게끔 한" 예[67]를 견주어 볼 때, '참학입선첩'은 초시 합격자인 입선이 받게 될 입선차첩보다 한 단계 밑의 차첩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예는 참학입선첩의 성격을 말해주는 동시에, '제작을 통해 발탁된 참학자'에게도 차첩이 발급되었음을 알게 한다.

즉 선과 결과에 따라 복시 내지 중시에 합격한 출신승에게는 '잡과백패식'에 따른 백패 발급과 함께 정7품·정8품의 등의 품계를 주어 주지로 차임하고, 초시에 합격한 입선으로서 대선 취재 때 '분수가 차지 않은(합격하지 못한)' 자에게 입선차첩을 주며, 제작으로 발탁된 참학자에게는 참학입선첩을 발급해 지음에 차임케 하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65) 白谷處能, 「奉恩寺重修記」, 『大覺登階集』 卷之二, 韓佛全 8, 325下면. "次以制作. 間有拔擢者. 曰叅學. 叅學者. 即儒家之小科也."
66) 『태종실록』 14년 7월 4일 條.
67) 『명종실록』 7년 5월 4일 條.

이렇듯 백패 내지 차첩을 받게 된 자들은 「대선방(大選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 것으로, 『허응당집』에는 출신자 발표일 봉은사 선불장(選佛場)에 붙여둔 것으로 추정되는, 「대선 방방일서(大選放榜日書) 시삽원고사(示卅員高士)」라는 다음 시(詩)가 소개되어 있다.

옛날 일찍이 대선이 있음을 들었건만
지금 어찌 이런 의식[참다운 거동] 보게될 줄 알았으리
천생(天生)의 대비께서 발(簾)을 드리운 날
큰 산에서 내리신 명군(明君)께서 어거하신 때
순임금[舜]의 태양 거듭 밝아 경과 탑은 [오히려] 밤과 같고
요임금[堯]의 바람 거듭 불어 법의 숲 [오히려] 시들하니
응당 과거 마당에 출현해 만날 어진 준걸 기약하며
이름 얼굴 가지런히 보니 기쁨 또한 슬픔 있어라.

古昔曾聞有大選, 當今何計見眞儀. 天生聖后垂簾日, 岳降明君御宇時.
舜日再明經塔夜, 堯風重扇法林萎. 應期賢俊逢場出, 名相齊觀喜且悲.[68]

또한 이들은 주지 차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허응당집』에는 다음과 같이 이들을 위한 축성(祝聖)의 시 「모든 대선의 무리들, 같이 주지의 첩(帖)을 받았네. 각기 1사(一寺)의 주인 되어 돌아가니, 게(偈)로써 교시[示]하노라」를 싣고 있다.

순임금[舜]의 태양 사사로움 없이 석문(釋門) 비추고
선림(禪林)은 의구하나 이 첩(帖)을 보게 되니
모든 스님들이여[師] 이제 다행히[幸] 앞선 자취 받들게 되니
모두 이름난 가람에 가서 축성할 것을 권하네.

舜日無私照釋門, 禪林依舊見斯文. 諸師今幸承前躅, 各去名藍祝聖勤.[69]

한편 명종 7년(1552) 5월 4일 실록 기사에서는 "그 나머지는 비록 차첩을

68) 普雨, 「大選放榜日書示卅員高士」, 『虛應堂集』(下), 韓佛全 7, 550下면.
69) 普雨, 「諸大選輩, 同受住持之帖, 各作一寺之主以歸, 以偈示之.」, 『虛應堂集』(下), 韓佛全 7, 550下면.

주지 않더라도 근각(根脚)·호구(戶口)가 이미 진성에 기록되어 있으니 빠짐없이 치부(置簿)하여 지음으로 차임한다면 잡승이 그 사이에 끼지 못할 것이다"[70] 하여, 도첩승 내지 호패승의 경우 선과에 따른 차첩 발급 여부를 떠나 지음에 차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내용 중 '근각을 조사한 예'로서 명종 7년(1552) 7월 기사에 "아비의 이름을 물었으면 그 근각을 조사했다고 할 수 있다"[71] 하여, 도첩 발급과 관련해 대규모의 '지음 차임'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어진 명종 7년(1552) 8월 기사에 "군적 정리가 임박했으니, 속히 시경(試經)하여야 잘하지 못한 자를 정역(定役)시킬 수 있다"[72] 하여 시경이 잡승을 걸러내 군역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 또한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대해 육조(六曹)의 당상(堂上)은 "상께서 매양 군액이 감축되는 것을 걱정하시어 정녕한 분부를 내리셨습니다만, 실은 한 나라의 백성을 모조리 상문[桑門, 불교]에 몰아넣고 있습니다"[73]는 우려를 전하고 있기도 하다.

3) 도첩승과 선과 초시 선발 인원

당시(1552) 보우는 선종판사(禪宗判事)로 있었으며,[74] 도승과 관련된 일은 양종에 전적으로 맡겨진 상태였다.[75] 이에 식년인 임오년(1552) 1월 시재행을 통해 400여 명에게 도첩을 발급한 후, 4월 12일 선종 21인과 교종 12인을 뽑은 선과의 복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후 다음 절차에 따라 선과가 재시행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시경에 따른 도첩승 인원을 한정했던바, 『명종실록』 7년(1552) 10월 기사에 다음 내용이 실려 있다.

---

70) 『명종실록』 7년 5월 4일 條.
71) 『명종실록』 7년 7월 3일 條.
72) 『명종실록』 7년 8월 4일 條.
73) 『명종실록』 7년 8월 6일 條.
74) 『명종실록』 7년 8월 6일 條.
75) 『명종실록』 7년 2월 14일 條. "試經하여 度僧하는 것을 兩宗에 전임시켰기 때문에 試經할 때 외람된 일이 많다고 한다."

> 양종에서 시경하는 승의 숫자를 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무 많이 뽑게 될 것이다. 더구나 양계(兩界)의 승은 많이 뽑을 수 없으니, 이번에 정한 액수 외에 다시는 지나치게 뽑지 말라는 것으로 예조에 이르라.【평안도·함경도는 각 100명, 전라도·경상도는 각 500명, 황해도·청홍도는 각 400명, 경기·강원도는 각 300명, 합 2,600명으로, 이 숫자를 양종으로 나누었다.】[76]

이처럼 시경승의 정액을 한정한 것은『경국대전』「예전」조에 생원시와 진사시의 경우 각 700인씩 1,400명을 뽑은 예[77]에 비추어, 선종과 교종에서 각 1,300명씩을 시경승으로 뽑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명종실록』8년(1553) 1월 기사에 "양종의 시경승 원래의 수 2,600명 중 2,580명에게 도첩을 성급해 주었습니다. 교종의 시경에서 전라도 승 250명 중 20명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78]는 내용은 위 정액에 따른 도첩 발급이 행해진 예를 알려 준다.

이후『명종실록』9년(1554) 8월 13일에 "내년은 식년이므로 선과 또한 시행해야 할 것인데, 예조가 선과의 절목을 계하(啓下) 받은 적이 없다. 만일 해당 조[該曹]에 등록이 없다면 양종에 물어 미리 살피도록 하라"[79]는 교서에 따라 동년 8월 18일 다음 기사가 실려 있다.

> 예조에서 아뢰기를, "선과에 관한 전례는 본조의 문안을 고찰해 보니 복시 날을 가린 일만 있고 초시에 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갑자년[1504]에 출신한 승인들 말이 '선과 초시 때 양종에서 각각 100명씩 뽑고, 이듬해의 복시 때 본조의 낭청을 보내 시험하여 뽑았다'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대로 양종에서부터 초시를 보이라" 하였다.[80]

이 기사는『명종실록』9년(1554) 8월 18일에, 선시 폐지 이전인 1504년의 예를 기술한 것으로, 본조 문안에 초시 관련 규정이 없기에 1504년의 출신승 말에 의거해 초시 때 양종 각각 100명씩 뽑는 예를 전하고 있다. 이에

76)『명종실록』7년 10월 16일 條.
77)『경국대전』禮典 諸科 條.
78)『명종실록』8년 1월 19일 條.
79)『명종실록』9년 8월 13일 條.
80)『명종실록』9년 8월 18일 條.

따르면 명종대의 경우 1554년 이전 선과에서는 초시가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선불교통사』에 "명종 7년 임자년(1552)으로부터 비로소 선과의 초시를 실시하였다"[81]는 내용 중 '명종 7년 임자년'은 '명종 9년 갑인년(1554)'을 잘못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불교통사』는 이어 "강경과 제술을 시험해 도첩을 주니 간략하게나마 문무과를 모방한 것이다"[82]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명종대왕 때 봉은사에 선과를 설치하여 보우 화상이 주가 되어 시험을 치렀는데 (…)"[83]라 하여 보우가 선과를 주관했음을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응당집』「갑인(甲寅, 1554) 10월 15일, 선종초시선불장방(禪宗初試選佛場榜)」에는 선과의 초시 시행일에 봉은사 선불장(選佛場)에 붙여 둔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내용이 실려 있다.

> 성군께옵서 특별히 (…) 과거의 법을 설치하시니 (…) 유교·불교에서의 지극히 공평하고 사심 없는 도(道)인 것이다. (…) 뜰에 가득한 모든 고인(高人)들은 이미 성군의 시대를 만나 다행히 과거 마당에 들어온 행운 얻었으니, 마땅히 모름지기 각기 자기 재능을 다함으로써 응당 사심 없는 선발에 응해야 할 것이다.
>
> 천 권 불경과 게송을 보았고, 만 권의 시를 품어 무리 가운데 뛰어난 그릇이라면 자연 함(函)과 덮개가 서로 맞겠지만, 혹시라도 배움에 있어 삼여(三餘)가 없고, 재주에 있어 칠보시(七步詩)의 재간이 없다면 (…) 필히 구차한 마음에 얻고자 하여 몰래 남의 손을 빌리려 할 것이다. 그러한즉 취한 허물이 가볍지 않아 반드시 방출될 것이다. 모름지기 이같은 이치를 방(榜)에 보이니, 미리 깨닫지 못함을 금하는 바이다.[84]

또한 "이 방(榜)을 선불장 앞에 크게 내걸어 뜰 가득한 고인(高人)들이 금령(禁令)을 좇고 의지해 서로 속임이 없이, 혹 금율(禁律)을 어겨 후회하지 않

81) 『조선불교통사』 明宗復禪科明心宗 條.
82) 『조선불교통사』 明宗復禪科明心宗 條.
83) 『조선불교통사』 高麗選佛初設僧科 條.
84) 普雨, 「禪宗初試選佛場榜【甲寅十月十五日也】」, 『虛應堂集』, 韓佛全 7, 554上면. "聖君特 (…) 設科擧之法, (…) 儒釋 至公無私之道也. (…) 諸滿庭高人 旣遇聖朝 幸獲逢場, 當須各盡己才 以應無私之選也. 若也目千經偈, 腹萬卷詩, 出衆茂詶 自然函盖相稱, 倘或學無三餘 才乏七步 (…) 必懷苟得 陰借他手. 然則取過非輕 必見放黜. 理須榜示, 預禁未諭者."

게끔 이를 새벽에 게시하고 각자에게 영(令)을 통지하라"[85] 하여 당시 선불장 광경을 설명하고 있다.

갑인년(1554) 이후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초시 때 양종에서 각각 100명씩 200명을 뽑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 해 식년(1555)에 치러진 복시와 중시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경국대전』「도승」조에서 복시 때 '선종과 교종 각 30인씩을 뽑는다'[86]는 내용과 『경국대전』「예전」'제과' 조에서 "문무전시(殿試)는 33인이다"[87]는 예에 비추어 입선 중 ⅓을 복시 내지 중시를 통해 뽑았음을 알 수 있다.[88]

한편 1558년(戊午) 식년의 선과 관련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며, 다음 식년인 1561년(辛酉) 선과와 관련해 『사명당대사집』 중 문제자(門弟子) 해안(海眼)이 찬(撰)한 「사명당송운대사행적(四溟堂松雲大師行蹟)」에 다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신유[辛酉, 1561, 명종 16]에 선과에 합격[中]하였다. 당시 학사(學士) 대부(大夫)로서, 박사암[朴淳]과 이아계[李山海], 고제봉(高敬命) (…) 같은 무리들이 모두 대사를 받들어[酬唱] [이름이] 사림(詞林)에 전파되었다.[89]

1561년(辛酉) 사명당 송운대사가 선과에 합격했음을 전하는 것으로, 『조선불교통사』에는 당시 출시(出試) 시제(試題) 및 선과 폐지와 관련된 다음 내용을 전하고 있다.

---

85) 普雨, 「禪宗初試選佛場榜【甲寅十月十五日也】」, 『虛應堂集』, 韓佛全 7, 554上면. "右榜出示於 選佛場前張掛, 仰滿庭高人 遵依禁令 無得相欺, 倘落禁律 後悔何及 故玆曉示, 各令通知."

86) 『경국대전』 禮典 度僧 條. "試禪宗則傳燈・拈頌, 教宗則華嚴經・十地論, 各取三十人."

87) 『경국대전』 禮典 諸科 條. "文科殿試, 三十三人.【甲科3人, 乙科7人, 丙科23人.】"

88) 양종 각각 100명씩 200명 중 ⅓에 해당하는 30인 내지 33인을 뽑는 것에 대해, 『명종실록』 7년 9월 2일 기사에서 이조 판서 송세형은 "儒生의 科擧는 응시하는 자가 3백여 명에 入格者는 불과 30-40명이고, 別科의 경우에는 講에 응시하는 자가 6백여 명에 入格者는 역시 30-40명에 불과한데 (…) 禪教의 試經에서 禮官이 ⅓을 뽑았으니 3백-6백 명에서 30-40명만 뽑는 것에 비하면 과람합니다"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89) 海眼, 「有明朝鮮國慈通廣澄尊者四溟堂松雲大師行蹟」, 『四溟大師集』, 韓佛全 8, 75中면. "辛酉中禪科. 一時學士大夫, 如朴思菴, 李鵝溪, 高霽峰, 崔駕運, 許美淑, 林子順, 李益之 之輩. 咸與之酬唱. 傳播詞林."

> 명종대왕 때 봉은사에 선과를 설치하여 보우(普雨) 화상이 그 시험에 실주(實主)가 되었으며, 청허(淸虛, 사명대사)와 송운(松雲, 서산대사)이 다 선과에 합격하였다. 세상에 전하기를, 보우가 출시(出試)한 시제(試題)에 이르되 "청정본연인데 어찌 홀연히 산하대지가 생겨났는가?(淸靜本然 云何忽生 山河大地)" 하였고, 송운의 답안 역시 이르되, "청정본연인데 어찌 홀연히 산하대지가 생겨났는가?"라 하였다. 보우가 죽음에 이르러 영원히 선과가 폐지되었으니, 실로 명종 20년이었다.[90]

위 선과 폐지와 관련해 『명종실록』 16년(1561) 11월 기사 중 "양종에 문의해 보았는데, 양종이 다시 설립된 뒤로 도첩을 받은 자가 무려 5천여 명이나 되고 (…)"[91]라는 내용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은 선과 부활 후 당시까지 1552년(壬子), 1555년(乙卯), 1558년(戊午), 1561년(辛酉) 등 4회의 식년이 있었음과, 명종 8년(1553) 1월 기사 중 "양종의 시경승 2,600명"이란 정액승 숫자를 감안할 때 5천여 명이란 숫자는 2회 정도의 시경(試經) 인원에 해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선과가 식년시에 따라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음을 추정케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후 『명종실록』 17년(1562) 7월 기사에 "보우의 도대선(都大禪) 관교(官敎) 직위를 삭탈하라 명하였다"[92]는 내용이 실려 있으며, 연이은 보우의 체임[命遞][93]은 그의 실각으로 이어졌을 것임을 짐작게 한다.[94] 이러한 정황 속에 1564년에 이르러 선과가 폐지되었던바, 『대각등계집』 「봉은사중수기」에는 선과의 폐지 정황을 알려주는 다음 내용을 전하고 있다.

> 가정(嘉靖) 갑자세[1564, 명종 19] 조정회의[朝議]에서 승과를 없앤 까닭에 선교(禪敎)가 일어나지 못한 지 108년이 되었다.[95]

---

90) 『朝鮮佛敎通史』(下編) 高麗選佛初設僧科 條. "明宗大王時. 奉恩寺. 設禪科. 普雨和尙. 實主其試. 淸虛. 松雲. 皆中禪科. 世傳. 普雨出試題曰 淸靜本然 云何忽生 山河大地. 松雲答案亦云. 淸靜本然. 云何忽生 山河大地. 及普雨死. 永廢禪科. 實明宗朝二十年也."

91) 『명종실록』 16년 11월 10일 條.

92) 『명종실록』 17년 7월 4일 條.

93) 『명종실록』 17년 9월 29일 條. "禪宗判事 普雨를 체임시켰다."

94) 『명종실록』 17년 12월 19일 條. "이조에 전교하기를, '선종 판사 보우에게 직첩을 환급하라' 하였다."

95) 白谷處能, 「奉恩寺重修記」, 『大覺登階集』 卷之二, 韓佛全 8, 325下면. "嘉靖甲子歲, 朝議革除僧科故.

이후『명종실록』20년(1565) 3월 12일 "문정왕후가 (…) 원각사를 다시 세우려 했으나 조정의 논의를 꺼려 감히 하지 못하였다"[96]는 기사 및, 보우의 권유로 인한 회암사의 무차회(無遮會) 불사로 인한 동년 3월 28일 문정왕후의 병환,[97] 4월 6일 문정왕후의 서거, 그리고 명종 21년(1566) 보우가 제주도에 유배되어 주살(誅殺)된 사건과의 관련 속에, 복원된 선과는 막을 내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시의 최종적 혁파에 대해『명종실록』21년(1566) 4월 20일 기사에는 다음 내용이 전하고 있다.

> 전교하였다. "양종의 선과는 공론을 좇아 혁파하겠다." 처음에 승 보우가 문정[文定王后]을 속여 양종의 선과를 설치하게 하였다가, 문정이 세상을 떠난 뒤 조정과 유생이 잇달아 죄 주기를 청하여 제주도에 유배되어, 목사 변협(邊協)에게 주살당했다. 양종 선과는 혁파되지 않다가 이때에 이르러 양사(兩司)의 계청으로 혁파되었다.[98]

또한 "양종 선과는 공론을 따라 혁파하도록 하겠다"는 위 내용과 함께『명종실록』21년(1566) 11월 16일 기사에 "전조(前朝) '도승니(度僧尼)의 실정[蠹政]'과 팔관회의 비용[糜費] 모두가 혁파되었다"[99]는 기록은 도승제 혁파와 관련한 종지부에 해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명종 21년 혁파된 선과는 이후 선조(宣祖) 26년(1593) 왕의 하교(下敎)에 의해 또다시 복원되었던바,『선조실록』26년 4월 기사에 "승려들[緇髡]이 왕에게 충성하여 여러 번 왜적을 생포하고 수급을 바쳤으므로 상께서 양종의 선과를 복원시키라 명하였습니다"[100]는 내용을 볼 수 있기도 하다.

禪敎之不振者, 百有八年於斯矣."

96)『명종실록』20년 3월 12일 條.

97)『명종실록』20년 3월 28일 條. "대왕대비의 병환이 오랫동안 낫지 않았다."

98)『명종실록』21년 4월 20일 條.

99)『명종실록』21년 11월 16일 條.

100)『선조실록』26년 4월 6일 條. "緇髡勤王, 屢獻擒馘, 自上命復兩宗禪科."

4. 결어

이상 필자는 「양종 복립과 선과」, 「명종대 선과의 양상」 등의 항목을 통해 명종 7년(1550) 선과 복원으로부터, 명종 21년(1566) 복원된 선과의 최종적 혁파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을 서술하였다.

먼저 1545년 7월 명종이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후, 명종의 자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도승과 양종 복립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명종 5년(1550) 12월 양종 복립을 명한 것을 계기로 폐지된 선시가 복원되었으며, 복원된 선시는 선과 또는 승과라 칭해졌다. 그럼에도 선과 복원이 본격화한 것은 명종 7년 식년인 임오년(1552)으로, 이때 처음으로 '시재행'과 함께 도첩을 발급하였다. 이때 복원된 선과 형식은 『경국대전』 규범과는 달리, 도승 조건으로서 '사천'의 경우가 생략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천'은 금승을 위한 조치로, 승의 증가로 인한 군액의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던바, 명종 대에 복원된 선과의 경우 이런 금승 조건이 완화된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과의 응시자격을 완화했던바, 역첩을 받은 자와, 주지・지음으로서 내수사의 차첩을 받은 자, 본 고을의 진성이 확인된 자 등에게 선과 응시를 허락하였다. 또한 도첩승 인원을 한정해 소과에서는 선종과 교종에서 각 1,300명씩 시경승 2,600명을 뽑았으며, 식년 한해 전에 실시한 선과 초시에서는 양종에서 각각 100명씩 뽑아 입선이라 칭한 채 입선차첩을 발급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 식년에 행한 복시에서는 입선 중 ⅓ 정도를 취해 대선이라 칭했다. 또한 대선을 대상으로 한 중시를 통해 선과의 등제를 정하고 사목에 기록했으며, 선과에 참여하지 못한 채 제술로 뽑힌 참학자에게는 참학입선첩을 발급하였다.

한편 중시를 통해 갑・을・병 3등 과를 뽑아 잡과에 따른 품계를 주었으며, 잡과에 의거한 승인백패(僧人白牌)를 발급하였다. 또한 선과에 입격한 출신승을 주지로, 참학승은 지음으로 각각 차첩을 주어 차임케 했던바, 도첩승의 경우 선과에 따른 차첩 발급 여부를 떠나 지음에 차임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조치에 육조의 당상은 "상께서 매양 군액이 감축되는 것을 걱정하시어

정녕한 분부를 내리셨습니다만, 실은 한 나라의 백성을 모조리 상문에 몰아넣고 있습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하였다.

이에『명종실록』16년(1561) 기사에 의하면 "양종이 다시 설립된 뒤로 도첩을 받은 자가 무려 5천여 명이나 되고 (…)"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인원은 단지 2회 정도의 시경승 인원에 해당한 것으로, 명종 대에 복원된 선과는 식년시의 원칙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명종 17년(1562) 7월 "보우의 도대선 관교 직위 삭탈"과 실각으로 인해 1564년에 선과가 폐지되었다. 이후 문정왕후가 양종의 선과를 복구하고자 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채 문정왕후의 서거, 보우의 제주도 유배와 주살과 함께 복원된 선과는 또다시 막을 내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經國大典』, 『經國大典註解』, 『大覺登階集』(『韓佛全』 8), 『大典續錄』, 『명종실록』, 『선조실록』, 『성종실록』, 『세종실록』, 『연산군일기』, 『예종실록』, 『용재총화』, 『조선불교통사』, 『중종실록』, 『태조실록』, 『태종실록』.

高橋亨, 『李朝佛教』, 國學資料院, 1980.

김경용, 「조선조 과거제도 시행과정의 탐색—식년시 문과와 생진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제25집 1호, 한국교육사학회, 2015, 1-47면.

김영태, 「조선전기의 度僧 및 赴役僧 문제」, 『佛教學報』 제32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95, 5-19면.

김창수, 「成衆愛馬考—여말선초 신분계층의 일단면」, 『동국사학』 제10집, 동국사학회, 1966, 17-36면.

문상련(정각), 「속초 보광사 불상 복장 전적—『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을 중심으로」, 『文化史學』 제47호, 문화사학회, 2017, 125-145면.

_____, 「조선의 승과, 선시(選試) 혁파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제39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9, 51-79면.

민순의, 「조선전기 도첩제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사문경, 「세종대 禪教兩宗都會所의 설치와 운영의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제17집, 조선시대사학회, 2001, 5-24면.

安啓賢, 「佛教抑制策과 佛教界의 動向—度牒制와 赴役僧」, 『한국사』 11권, 국사편찬위원회, 1974.

양혜원, 「조선초기 법전의 僧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7.

_____, 「15세기 승과(僧科) 연구」, 『한국사상사학』 제62집, 한국사상사학회, 2019, 59-88면.

이봉춘, 「조선시대의 승직제도」, 『한국불교학』 제25집, 한국불교학회, 1999, 167-196면.

이승준 「朝鮮初期 度牒制의 運營과 그 推移」, 『湖西史學』 제29집, 湖西史學會, 2000, 1-36면.

전영근, 「朝鮮時代 寺刹文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1.

황인규,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도첩제의 시행과 그 의미」, 『보조사상』 제22집, 보조사상연구원, 2004, 251-306면.

【Abstract】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Triennial Examination for Buddhist Monks in the Joseon Period

Moon, Sang-Leun (Jung Gak)*

There had been an examination for Buddhist monks to select managers of temples since the announcement of *Kyongjeyukchon* in the sixth year of King Taejo's reign in early Joseon. In the second year of King Taejong's reign, they began to issue an identity tag through the 'Talent Test' based on *Kyongjeyukchon*. The norms under the item of 'Entering the Monastic Life' in "Yejon" of *Gyunggukdaejeon* proclaimed in the 16th year of King Seongjong's reign became grounds for the Monastic Identity Tag System according to Entering the Monastic Life and also the examination for Buddhist Monks. The issuance of the Monastic Identity Tag System was, however, suspended in the 23rd year of King Seongjong's reign. In December in the 11th year of King Chungchong's reign, the item of 'Entering the Monastic Life' was deleted from *Gyunggukdaejeon*. As a result, there were no more ground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riennial examination.

The study then describe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wo denominations again supported by Monk Bowoo and the government of Queen Munjeong in the fif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the process of issuing a Monastic Identity Tag based on the sutra test in the seven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and the process of restoring Seongwa (triennial examination) in the nin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Seonsih (triennial examination), however, did not progress smoothly according to the principle.

Later, the restored triennial examination came to an end after the removal of Monk Bowoo from his official position in the 17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the discontinuity of the Buddhist Monk's Examination in the 19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Queen Munjeong's efforts to restore Seongwa (triennial examination) in the 20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the death of Queen Munjeong in the 20th year of King

* Professor, Dept. of Buddhist Studies, Joong-ang sangha Univ.

Myeongjong's reign, and the murder of Monk Bowoo on Jeju Island where he was exiled in the 21st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In the 21st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the triennial examination was ultimately abolished.

Keywords: examination for Buddhist monks, triennial examination, Monastic Identity Tag, two denomination, Identity Tag System.

접수일: 2020.03.20. || 심사일: 2020.04.10. || 게재확정일: 2020.05.18.